

사회복지 주간 동향 (20.7.6.~7.10.)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 동향

1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현안

온라인 복지 교육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송담대 맞손

[용인시, 지난 3일 시장실서 협약·유튜브 통해 사회복지 교육 영상 제공]



- *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일 시청 시장실에서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용인송담대학교와 온라인 복지 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음
 - 코로나19 위기로 협의체 위원들의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자 유튜브로 영상을 제공해 온라인 교육은 물론 시민 누구나 시청하도록 도우려는 것
- * 이날 협약식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한숙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최성식 용인송담대학교 총장이 참석
- * 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송담대 학생들이 의료·간호, 사회복지 등 교육 콘텐츠를 기획해 동영상 제작 후, 협의체는 유튜브 영상으로 위원들에게 온라인 교육진행
 - 시는 영상 제작 지원을 하고 복지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홍보
 - 영상은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 육아·복지 상식 등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사회복지를 이해하도록 10분 이내로 제작하고 협의체는 이달 중 채널을 개설해 1차 영상을 공개할 방침
- * 백 시장은 “협의체 위원들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학이 손을 맞잡고 비대면 교육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라며 “맞춤형 복지상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즐겁게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함

※ 보도자료 참조(광고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1.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0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를 발간함
 -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
- * 이번엔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 3.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현행 : 2천 → 확대 : 3천만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등
 -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현행: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판매 : 5년 이상의 징역, 배포:3년 이상의 징역, 소지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등
 -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현행 :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등

-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액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
 - 6월 29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로드 가능
 - 7월 10일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
 -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 *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2 중앙정부 복지현안

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가옵니다

[공식 소득통계이며 중위소득 수준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기반 통계 변경]

- * 보건복지부는 7월 3일(금)에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 최종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 *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하여 산출
 - 단,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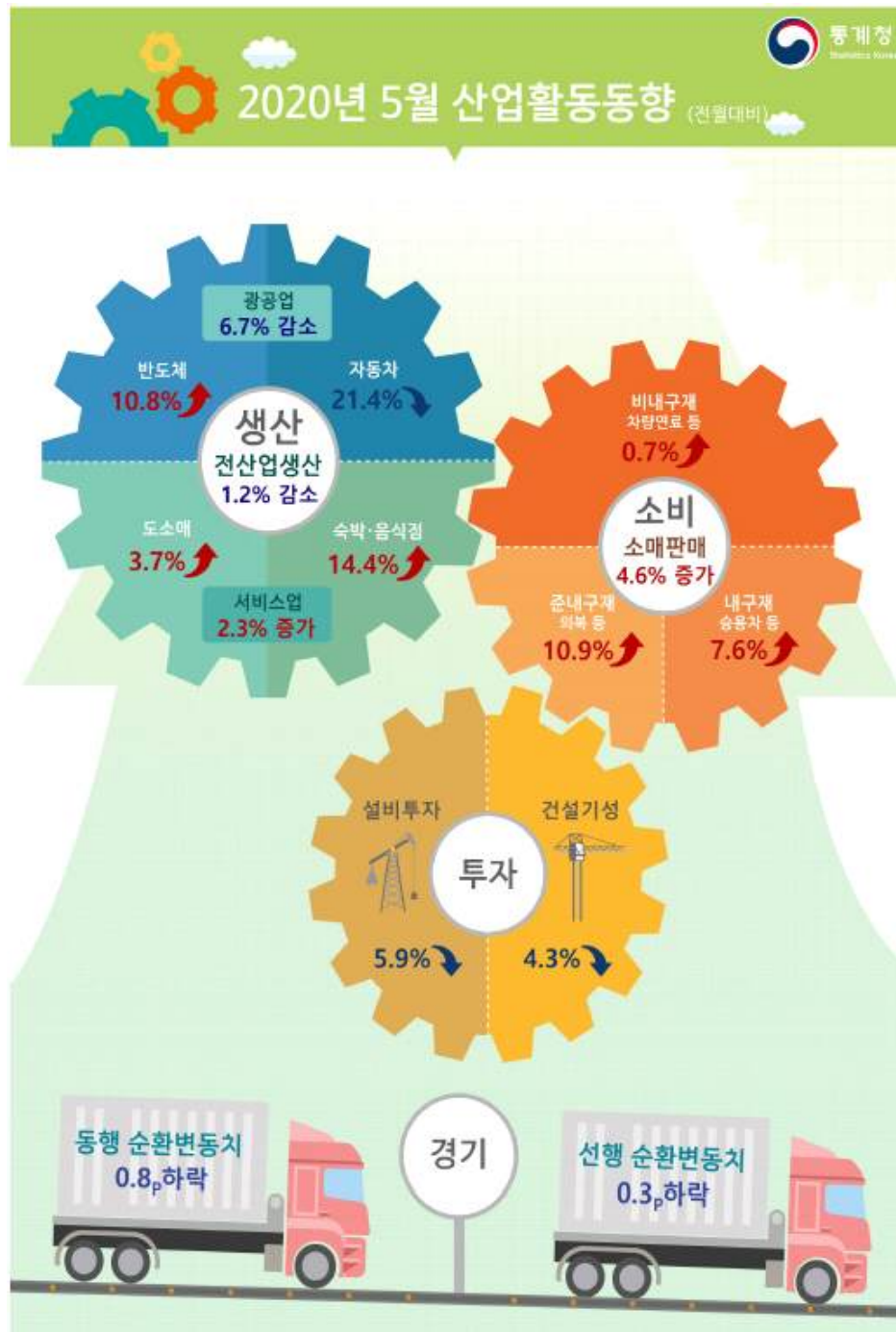
- 예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활용 가능한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8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경기 변동·수급자 최저생활수준 등을 감안한 최종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7월 말까지 결정
- *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
 - 도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 이 방식은 과거 시점의 소득 통계를 활용해 2년의 시차가 있는 미래의 중위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치와 실제 통계의 중위소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 있음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사례) 2016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인 423.8만 원을 바탕으로, 2017년 434.4만 원, 2018년 445.3만 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전 예측치를 바탕으로 이미 산출했던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46.7만 원으로 2018년 예측 수준(445.3만 원)보다 높음
 - 이에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 (2018년도 : 가계동향조사 최신 단년도 증가율 → 2019년도 : 가계동향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 2020년도 :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조합)을 적용하여 결정)
 -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TF'를 운영
 -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원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결정(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 또한,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
-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2018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원
- *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오는 7월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0년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사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과)